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부천도시공사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8.07.02. 세칙 제30호

개정 2020.09.18. 세칙 제58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부천도시공사 소속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9.18.>

1. “위원회”란 심의회, 자문위원회, 협의회, 협의체 등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 조례, 상위기관 훈령 및 지침(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과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규정 또는 세칙에 따라 설치한 기구(주요한 정책의 결정과 정부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사장의 결재를 얻어 구성한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공사 임직원 이외에 위촉되는 위원회 위원과 인사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외부 시험위원을 말한다.
3. “참석수당”이란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 및 각종 시험전형에 참석(원격영상회의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4. “사전검토수당”이란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 참석 이외에 회의안건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등의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자문료”란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또는 법인으로 부터 공사의 사무 처리와 정책 결정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수당 등에 관하여 법령 등과 해당 위원회 규정 또는 세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4조(참석수당) 참석수당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사전검토수당) ① 사전검토수당은 검토 안건 1건당 1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서로 연관된 사항으로써 2개 이상의 안건을 동일한 위촉직 위원이 동시에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가 지급하되, 그 추가 지급액의 합계액은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관된 두 번째 안건 : 5만 원

2. 연관된 세 번째 이상의 안건 : 건당 2만 5천 원

② 검토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자료 작성 보고서에 따라 작성 및 보고한다.

제6조(자문료) ① 자문료는 자문 안건 1건당 10만 원 지급한다. 다만, 질의 내용의 주제가 명백하게 다른 것으로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질의부터 5만 원을 추가 지급하되, 최대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통상적인 자문 안건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1항의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문 용역을 맺어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중 책임연구원의 1일 단가에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자문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 답변이 자문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문료를 낮추어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9.18.]

제7조(적용 제외) 자문료 중 별도의 자문 계약을 통해 자문료가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09.18.]

제8조(출장여비 등 실비변상) ①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규정에서 정한 부서장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원격지 범위 별표 1에서 정한 지역에서 위촉직 위원이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여비규정과 공무원 여비규정 등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소속기관에서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한다)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원격영상회의 개최를 위해 위촉직 위원이 부담하는 장비 구입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0.09.18.>

[제6조에서 이동 <2020.09.18.>]

부 칙

(2019.07.02. 세칙 제30호)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9.18. 세칙 제58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료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세칙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자문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 표 1]

원격지 범위 (제8조제2항 관련)

원격지 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별지 제1호서식]

검토자료 작성 보고서(제5조제2항 관련)

위원회명:
검토사항:
작성 및 보고 위원:
보고 예정일:
검토사항 요지 ※ 간략한 개요만 기재하고 결과물은 별도 첨부 1. 2. 3.
첨부서류: 검토내용 작성본 1부 ※ 첨부서류는 「훈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PowerPoint 또는 다른 종류인 경우에는 사전협의로 결정 ※ 첨부서류 작성 분량은 최소 A4 2장 이상의 분량으로 작성

